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대통령경호처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또는 5급 11명)을 종전의 직급(4급 4명, 5급 11명)으로 환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16명(6급 1명, 7급 15명)을 감축하는 한편,

대통령경호처에 전직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인력 27명(3급 1명, 4급 4명, 5급 10명, 6급 8명, 7급 4명) 및 방호에 필요한 인력 20명(6급 1명, 7급 7명, 8급 6명, 9급 6명)을 각각 증원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원 25명(4급 2명, 5급 23명)의 직급을 조정(3급 또는 4급 2명, 4급 또는 5급 9명, 6급 14명)하면서, 정원 2명(5급 2명)을 감축하며, 부처간의 협업강화를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1명(5급 1명)을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관련 정원을 조정하고, 대통령경호처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7급 1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1명(7급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대통령경호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1. 23. ~ 11.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9조 중 “33명”을 “17명”으로, “6급 11명, 7급 18명”을 “6급 10명, 7급 3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646”을 “691”로 하고, 특정직 계 “438”을 “458”로 하며, 부이사관 “17”을 “18”로, 부이사관 또는 경호서기관 “7”을 “9”로, 경호서기관 “53”을 “55”로, 경호서기관 또는 경호사무관 “13”을 “22”로, 경호사무관 “137”을 “121”로, 경호주사 “108”을 “130”으로, 일반직 계 “207”을 “232”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 1”을 신설하며, 방호주사 “10”을 “11”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위생주사보 “30”을 “35”로, 방호주사보 “36”을 “43”으로, 방호서기 “39”를 “45”로, 방호서기보 “31”을 “37”로, 건축운영주사보·전기운영주사보·기계운영주사보·열관리

운영주사보·농림운영주사보 또는 사무운영주사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662”를 “691”로 하고, 특정직 계 “454”를 “458”로 하며,
 부이사관 “17”을 “18”로, 부이사관 또는 경호서기관 “11”을 “9”로, 경호
 서기관 “49”를 “55”로, 경호서기관 또는 경호사무관 “24”를 “22”로, 경호
 사무관 “128”을 “121”로, 경호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8”을 “10”으로,
 경호주사 “108”을 “129”로, 경호주사보 “69”를 “54”로, 일반직 계 “207”을
 “232”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 1”을 신설하며, 방호주사 “10”을
 “11”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
 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위생주사보 “30”을
 “35”로, 방호주사보 “36”을 “43”으로, 방호서기 “39”를 “45”로, 방호서기
 보 “31”을 “37”로, 건축운영주사보·전기운영주사보·기계운영주사보·
 열관리운영주사보·농림운영주사보 또는 사무운영주사보 “4”를 “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영 시행 당시 총
 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된 대통령경호처의 정원 8명(경호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1명, 경호주사보 3명 및 경호서기·행정서기·공업서
 기·농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방송통신서기·운전

서기 또는 위생서기 4명)과 대통령경호처 소속기관의 정원 1명(경호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1명)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1월 30일 이후에는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주사 1명, 경호서기보·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임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운전서기보 또는 위생서기보 7명으로, 대통령경호처 소속기관의 경호주사 1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생 략)	제7조(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9조(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특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u>33명</u> (4급 1명, 5급 2명, <u>6급 11명</u> , 7급 18명, 8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9조(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특례) ----- ----- ----- <u>17명</u> ----- ----- <u>6급 10명, 7급 3명</u>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대통령경호처 공무원 정원표(제7조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46</u>	<u>691</u>	+45
·	·	·	
·	·	·	
특정직 계	<u>438</u>	<u>458</u>	+20
·	·	·	
·	·	·	
부이사관	<u>17</u>	<u>18</u>	+1
·	·	·	
부이사관 또는 경호서기관	<u>7</u>	<u>9</u>	+2
경호서기관	<u>53</u>	<u>55</u>	+2
·	·	·	
경호서기관 또는 경호사무관	<u>13</u>	<u>22</u>	+9
경호사무관	<u>137</u>	<u>121</u>	-16
·	·	·	
경호주사	<u>108</u>	<u>130</u>	+22
·	·	·	
·	·	·	

일반직 계	<u>207</u>	<u>232</u>	+25
<u>행정사무관</u>	<u><신 설></u>	<u>1</u>	+1
.	.	.	
방호주사	<u>10</u>	<u>11</u>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임업주			
사보 · 시설주사보 · 전			
산주사보 · 방송통신주			
사보 · 운전주사보 또는			
위생주사보	<u>30</u>	<u>35</u>	+5
방호주사보	<u>36</u>	<u>43</u>	+7
.	.	.	
방호서기	<u>39</u>	<u>45</u>	+6
방호서기보	<u>31</u>	<u>37</u>	+6
.	.	.	
건축운영주사보 · 전기운			
영주사보 · 기계운영주			
사보 · 열관리운영주사			
보 · 농림운영주사보 또			
는 사무운영주사보	<u>4</u>	<u>3</u>	-1
.	.	.	
.	.	.	

[별표 2]

대통령경호처 공무원 정원표(제7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62</u>	<u>691</u>	+29
•	•	•	
•	•	•	
특정직 계	<u>454</u>	<u>458</u>	+4
•	•	•	
•	•	•	
부이사관	<u>17</u>	<u>18</u>	+1
•	•	•	
부이사관 또는 경호서기관	<u>11</u>	<u>9</u>	-2
경호서기관	<u>49</u>	<u>55</u>	+6
•	•	•	
경호서기관 또는 경호사무관	<u>24</u>	<u>22</u>	-2
경호사무관	<u>128</u>	<u>121</u>	-7
경호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u>8</u>	<u>10</u>	+2
경호주사	<u>108</u>	<u>129</u>	+21
•	•	•	
경호주사보	<u>69</u>	<u>54</u>	-15

.	.	.	
.	.	.	
일반직 계	<u>207</u>	<u>232</u>	+25
<u>행정사무관</u>	<u><신 설></u>	<u>1</u>	+1
.	.	.	
방호주사	<u>10</u>	<u>11</u>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임업주 사보 · 시설주사보 · 전 산주사보 · 방송통신주 사보 · 운전주사보 또는 위생주사보	<u>30</u>	<u>35</u>	+5
방호주사보	<u>36</u>	<u>43</u>	+7
.	.	.	
방호서기	<u>39</u>	<u>45</u>	+6
방호서기보	<u>31</u>	<u>37</u>	+6
.	.	.	
건축운영주사보 · 전기운 영주사보 · 기계운영주 사보 · 열관리운영주사 보 · 농림운영주사보 또 는 사무운영주사보	<u>4</u>	<u>3</u>	-1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08